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형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17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1일

발 의 자 : 우형찬 의원(1명)

찬 성 자 : 임만균, 황인구, 이영실, 홍성룡,  
김상훈, 김태호, 장상기, 이정인,  
권영희, 강대호 의원(10명)

## 1.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기반 택시사업 환경의 변화와 ICT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 차고지 밖 교대근무 등을 실증특례로 지정('20.7.27.) 관리하는 등 택시산업의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택시업체 노사간 갈등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택시 운영을 통해 택시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택시산업 제도변경을 고려하여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에 대한 정의 삭제(안 제2조)
- 나. 포상금지급대상 중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와 별표 위반 행위 중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3조, 별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표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위반행위별 신고·고발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위반 행위	포상금액	비고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6.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9. 불법 유상운송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1. ~ 4. (생략)
-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 6. ~ 11.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삭제>
- 5. ~ 10. (현행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고발포상금 지급 기준

위반행위별 신고·고발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제4조 관련)

위반 행위	포상금액	비고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 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 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 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 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 금 징수행위	500,000원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11. 그 밖에 규칙으 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위반 행위	포상금액	비고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 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 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 도·양수	1,000,000원	
5.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6. 시내버스 운송수 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7.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 금 징수행위	500,000원	
9. 불법 유상운송 행 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10. 그 밖에 규칙으 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